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조항신설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안 제2조 지원 대상자 및 제3조 지원방법 일부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2조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을 대상자로 추가 포함하여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2조제6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급식지원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3조제4항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2. 9. 1일부터 9.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2. 9.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 와 같이

-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법을 구체화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2036
----------	----------

제출년월일: 2022. 9. 30.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 나. 급식지원대상자 규정 변경 (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 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방법 명확화 (안 제3조제1항제2호)
- 라. 급식단가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1.~ 9. 2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6)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3조제1항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을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p> <p>2. ~ 5. (생략)</p> <p>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p> <p>7. ~ 9. (생략)</p> <p>제3조(지원방법)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p>	<p>제1조(목적) ----- -----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p> <p>제2조(지원 대상) ----- -----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p> <p>2. ~ 5. (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p> <p>7.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방법) ① ----- ----- ----- -----</p>

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생략)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지원
 3. ~ 5. (생략)
- ②·③ (생략)
-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3. ~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1.12.21.신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22.6.21.신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2022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